

#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(국문)

## 선박용 배터리시스템 지침

(외부개발검토 - 외부의견조회)



2023.02.

선체규칙개발팀

## 개정 배경 및 내용

### (1) 개정 배경

- 1) 선급기술규칙 제/개정요청서[HUT4000-3406-2022]에 근거하여, 명확한 배터리실 방열 적용을 위해 문구 수정함.

### (2) 개정 내용 : 신규 대조표 참조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장 구조 및 설비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3 절 &lt;생략&gt; 제 4 절 방화 및 소화</p> <p>401. 일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절의 요건은 선급 및 강선규칙 8편에 추가하여 적용한다.</li> <li>2. 배터리실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호 목적상 기타기관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.</li> <li>3. 배터리실은 A-0급 <u>격벽으로</u> 폐위되어야 하며, 다음 구획과의 경계는 A-60급 방열을 적용하여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SOLAS Reg. II-2/3에서 규정하는 A류 기관구역</li> <li>(2) 위험물 운송을 위한 화물 구역</li> </ol> </li> <li>4. 배터리실에 있는 소화 시스템의 배치와 배터리 또는 다른 구성품의 냉각을 위한 물 분사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, 필요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.</li> </ol> <p>&lt;이하 생략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장 구조 및 설비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~ 제 3 절 &lt;생략&gt; 제 4 절 방화 및 소화</p> <p>401. 일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절의 요건은 선급 및 강선규칙 8편에 추가하여 적용한다.</li> <li>2. <u>배터리구역</u>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호 목적상 기타기관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.</li> <li>3. <u>배터리구역</u>은 A-0급 <u>구획으로</u> 폐위되어야 하며, 다음 구획과의 경계는 A-60급 방열을 적용하여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SOLAS Reg. II-2/3에서 규정하는 A류 기관구역</li> <li>(2) 위험물 운송을 위한 화물 구역</li> </ol> </li> <li>4. 배터리실에 있는 소화 시스템의 배치와 배터리 또는 다른 구성품의 냉각을 위한 물 분사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, 필요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.</li> </ol> <p>&lt;현행과 동일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 진행된 수정사항 결과반영(지침내 용어 일원화를 위해 수정)</li> <li>- 현행 ‘격벽으로 폐위되어야 하며’는 A-0급 폐위 적용에 갑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수정함.</li> </ul>